

“인턴십 교육프로그램을 ‘열정페이’로 오해” 주장

— 중재부 합의 이끌어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한 계층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 행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일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공인외국어 성적, 각종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각종 스펙을 갖춰도 취업의 문은 좁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어지자 이를 악용하여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아예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고용주들도 생겨났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일할 기회만이라도 필요했던 청년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열정페이’를 받으며 일하기도 한다. 이처럼 ‘열정페이’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자 언론도 연일 이와 관련된 보도를 쏟아냈다. 조정대상보도도 이와 관련된 보도였다. 한 비영리 연구기관이 무급 인턴사원을 뽑아 정규직과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기사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연구기관은 사실이 아

닌 기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인 연구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근로채용의 형태인 ‘인턴사원’제도가 아닌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인턴교육프로그램’으로 10년째 이어져오고 있어 최근 이슈가 된 ‘열정페이’와는 관계가 없으며, 모집공고상에 게재된 업무내용은 해당 인턴의 업무내용이 아닌 부서의 업무내용이라는 것이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언론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모집공고상에 분명 ‘업무’, ‘근무’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중재부는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인턴 모집공고를 면밀히 살폈고, 기존에 실시됐던 인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및 상시근로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 검토하였다. 중재부는 심리에 참석한 양당사자들을 상대로 그때까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에 임했다. 신청인에게는 모집공고상 언론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었음을 주지시키고, 언론사에게는 해당 업무가 실질적으로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인지를 자세히 취재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

을 전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한 발씩 양보하여 신청인 인턴십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이며, 보도에 언급된 업무는 인턴의 업무가 아닌 부서의 업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피신청인이 게재하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양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이 시작되기 전, 잘못된 보도이기에 꼭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청인측과 신청인이 게재한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피신청인측이 팽팽하게 맞서 쉽지 않은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중재부의 합리적인 조정안에 양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정은 양당사자간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사람은 없다.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양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중재부가 추구하는 ‘조정’이다.